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3.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0월 22일, 김선민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2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1.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회부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 2. 20.)

상정, 축조심사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2025. 3. 2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 3. 20.)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선민의원)

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2%로,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의 지급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지난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조정하자는 모수개혁안에 의견을 모았음. 그러나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한바, 이번 국회에서 지난 연금특위의 의견을 이어 개혁을 완료해야 할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상향하여 국민연금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는데, 개정안과 같이 명목소득대체율이 일시에 인상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기간에 대한 급여액을 기존 계산법에 따라 산정되므로 현재 시점의 수급권자에게까지 그 효과가 소급하여 미치지 않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미애)

1998년 이후 27년간 보험료율 인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어려웠으나, 제21대 국회 연금특위가 주관한 ‘연금개혁 공론화’ 등을

통하여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점과 연금개혁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수용성 높은 대안에서부터 연금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노후생계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국민연금은 청년세대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민의 노후를 지키면서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보험료율 인상에 상응하는 명목소득대체율 인상은 현재까지의 기금운용수익률(약 6.1%)을 반영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준으로 정하여져야 함에도 정부안(42%)은 그에 미흡하다는 의견, 명목소득대체율이 40%일 때 국민연금기금을 70년 이상 유지하기 위한 필요보험료율은 18.1%+α 수준으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더라도 불완전한 측면이 있으며, ‘표적효율(target efficiency)’에 부합하는 하후상박형 기초연금으로의 재설계와 의무 가입 퇴직연금의 제도화 등을 위한 특위를 가동하여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할 구조개혁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 향후 기금적립금이 줄어드는 단계에서는 기금운용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점이 고려될 필요가 있고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특위 구성·운영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21대 국회 연금특위 마무리 무렵(’24. 5월) 명목소득대체율과 관련하여 국민의힘은 44%를 언급하였고 민주당은 당초 45%에서 44%로 수정·제안하였던 점에 비추어 정부안(42%)을 지적하는 의견, 연금개혁의 중요성·시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과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모수개혁을 우선 처리한 후 구조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연금개혁은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가 관계된 사안으로서 특위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되었고, 개정안의 내용을 채택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